

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신복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49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26일

발 의 자: 신복자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동욱,
김영철, 김재진, 김태수,
남궁역, 남창진, 박 석,
박성연, 박춘선, 오금란,
유만희, 이원형, 이종환,
최민규 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- 동 조례의 상위법인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0조는 동법상의 여러 감염병 관리 조치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‘의무규정’을 명시하고 있음.
- 그런데, 현행 조례 제28조의 ‘손실보상 규정’은 상위법과 달리 손실을 입은 자에게 ‘예산의 범위’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상위법과 정합성이 맞지 않고, 상위법에 없는 ‘예산의 범위’라는 제한을 추가적으로 두고 있음.
- 그리고 이는 서울시가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상위법과 달리 감염병 관리 조치 등으로 인한 손실을 ‘예산 사정’에 따라 가변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잘못 해석할 소지가 있어 개정이 필요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현행 조례 제28조 상의 손실보상 규정을 상위법 제70조의 손실보상 규정에 부합하게 정비함. (안 제2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8조(손실보상) 시장은 법 제70조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에게 법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손실보상) ①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8조에 의한다.	제28조(손실보상) 시장은 법 제70조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에게 법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28조(손실보상)에 보상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규정¹⁾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 상 손실 보상²⁾이라는 큰 틀에서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추가 비용발생은 없을 것으로 보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- 1) 각종 관련자료 확인 및 문의결과 본 개정안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률과 조례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[참고] 상위법령 규정사항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70조(손실보상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**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**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29., 2018. 3. 27., 2020. 8. 11., 2020. 8. 12., 2020. 12. 15.>

- 2) 참고로 서울시 관련부서(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) 문의결과 현재 시장이 지정한 감염병관리시설이 없어 별도로 시 차원에서 손실에 대해 보상하고 있지 않아 현재와 같은 추이가 계속될 경우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